

日本語	翻訳
<p>受動喫煙防止対策 施設管理者向けハンドブック ～改正健康増進法・東京都受動喫煙防止条例～</p>	<p>간접흡연 방지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개정 건강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p>
<p>① 受動喫煙防止対策の目的</p>	<p>① 간접흡연 방지 대책의 목적</p>
<p>日本では、受動喫煙による年間死亡者数は推定約 1 万 5 千人と言われており、受動喫煙は肺がんや虚血性心疾患等、様々な疾患と関連す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ています。</p> <p>自らの意思で受動喫煙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環境の整備を促進することにより、受動喫煙による健康への悪影響を未然に防止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国及び都では法律や条例で対策を行っています。</p>	<p>日本에서는 간접흡연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 만 5 천 명으로 추정되며 간접흡연은 폐암이나 허혈성 심질환 등 여러 질환의 요인이 밝혀졌습니다.</p> <p>스스로 의사로 간접흡연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간접흡연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도에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p>
<p>②健康増進法と東京都受動喫煙防止条例</p>	<p>②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p>
<p><u>改正健康増進法について</u></p> <p>改正前の「健康増進法」では、多数の者が利用する施設を管理する者に対し、受動喫煙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努力義務を定め、受動喫煙防止の取組を推進してきました。一方、依然として、受動喫煙に遭遇した非喫煙者は多いことがわかっています。</p> <p>こうした経緯を踏まえ、2018 年 7 月、多数の者が利用する施設等の類型に応じて、その利用者に対し、一定の場所以外での喫煙を禁止するとともに、施設等の管理権原者が講ずべき措置等について定める法改正を行いました。</p>	<p><u>개정 건강 증진법에 대해</u></p> <p>개정 전의 「건강 증진법」에서는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 대해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간접흡연 방지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여전히 많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 <p>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2018년 7월,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유형에 따라 그 이용자에 대해 지정 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흡연을</p>

	금지함과 동시에 시설 등 관리 권원자가 강구하여야하는 조치 등에 관해 규정하는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u>東京都受動喫煙防止条例について</u>	<u>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대해</u>
2018年6月に成立した「東京都受動喫煙防止条例」は、特に健康影響を受けやすい20歳未満の子供や、受動喫煙を防ぎにくい立場である従業員を、受動喫煙から守る観点から、都独自のルールを定めています。	2018년 6월에 성립한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는 특히 건강 피해를 받기 쉬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접흡연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의 종업원을 간접흡연의 노출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부터 도의 독자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管理権限者等の主な責務	③관리 권원자 등의 주된 책무
改正法及び都条例において、「管理権原者」とは、所有者等の、施設等の設備の改修等を適法に行うことができる権原を有する者をいいます。また、「管理者」とは、管理権原者とは別に、事実上現場の管理を行っている者をいいます。 管理権原者・管理者には受動喫煙を防止するための責務があります。	개정법 및 도 조례에서 「관리 권원자」란 소유자 등의 시설 등 설비 개수 등을 적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권원을 보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관리자」란 관리 권원자와는 별도로 사실상 현장 관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 권원자·관리자에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책무(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喫煙器具・設備の撤去	■흡연 기구·설비의 철거
喫煙してはいけない場所に、喫煙をするための器具や設備を設置してはなりません。	흡연 금지 구역에 흡연을 위한 기구나 설비를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喫煙者への喫煙の中止等の依頼	■흡연자에 대한 흡연 중지 등 의뢰
喫煙してはいけない場所で喫煙をしている（または喫煙しようとしている）者に対して、喫煙の中止またはその場所からの退出を求め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한 자(또는 흡연하려고 한 자)에 대해 흡연 중지 또는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출을 요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ん。	
■標識の掲示	■안내 표지 설치
施設内に喫煙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がある場合は、喫煙室と、その施設の主な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その旨を表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飲食店は、店内禁煙の場合も、その旨を表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시설 내에 흡연 구역이 설치되어있는 경우는 안내 표지를 흡연실과 그 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 음식점은 매장 내 금연의 경우도 그 취지에 대해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違反した場合	위반한 경우
保健所等による指導・助言、勸告・公表・命令、立入検査*のほか、過料の対象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보건소 등에 의한 지도·조언, 권고·공표·명령, 현장 검사*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立入検査では、以下の内容を想定しています。立入検査への対応も、管理権原者等の責務です。	*현장 검사에서는 다음 내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검사 시의 대응도 관리 권원자 등의 책무(책임과 의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受動喫煙を防止するための措置の実施状況に関し報告を求めること ・職員が特定施設等に立ち入り、当該措置の実施状況や帳簿等を検査すること ・関係者に質問するこ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직원이 특정 시설 등에 입장하여 해당 조치의 실행 상황이나 장부 등 검사 ・관계자에게 질문
他の関係省令により、従業員の新規募集を行う者に対し、当該施設の受動喫煙防止の状況について、募集や求人申込みの際に明示することを義務づけます。	기타 관계 성령에 의거,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해당 시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상황에 관해 모집 공고를 게시하거나 구인 신청 시에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対象施設の類型	④대상 시설의 유형
第一種施設	제 1 종 시설

●敷地内禁煙	●부지 내 금연
学校、病院、児童福祉施設、行政機関の庁舎 など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행정 기관의 청사 등
第二種施設	제 2 종 시설
●原則屋内禁煙	●원칙 옥내 금연
第一種施設及び喫煙目的施設以外の多数の人が利用する施設 ※ 飲食店は一部取扱いが異なります。	제 1 종 시설 및 흡연 목적시설 이외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음식점은 일부 요건이 다릅니다.
喫煙目的施設	흡연 목적시설
●喫煙可	●흡연 가능
・たばこの対面販売をしているなどの一定の条件を満たしたバーやスナック ・たばこ販売店 ・公衆喫煙所	·담배의 대면 판매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바(Bar)나 스낵 주점 ·담배 판매점 ·공중 흡연 구역
バス・タクシー・飛行機・鉄道・船舶	버스·택시·비행기·철도·선박
※ 以下は規制の対象とはなりません。ただし、区市町村が独自に喫煙ルールを定めている場合があります。詳しくは、所在地の区市町村にご確認ください。	※다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구시초선(区市町村)이 독자적으로 흡연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의 구시초선에 확인해 주십시오.
・第一種施設の敷地内を除く屋外* ・住居やベランダ、入居施設の個室等、人の居住する場所 ・ホテルや旅館の客室、鉄道や船舶の宿泊用の客室	·제 1 종 시설의 부지 내를 제외한 옥외* ·주거나 베란다, 입주 시설의 개인실 등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 ·호텔이나 여관의 객실, 철도나 선박의 숙박용 객실
*施設の屋内とは、①屋根がある建物であり、②側壁が概ね半分以上覆われているものの内部の場所です。これに該当しない場所は屋外とします。	*시설 옥내란 ①지붕이 있는 건물이며 ②옆벽이 대체로 반 이상 덮여 있는 건물 내부를 뜻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은 옥외로 취급합니다.
⑤施設ごとの規制内容	⑤시설별 규제 내용

<p>1 病院・行政機関の庁舎など</p>	<p>1 병원·행정 기관의 청사 등</p>
<p>■対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病院、診療所、助産所、薬局 ・ 介護老人保健施設及び介護医療院 ・ 難病相談支援センター ・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ゅう師または柔道整復師が業務を行う施術所 ・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の行政機関の庁舎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진료소, 조산소, 약국 · 개호 노인보건시설 및 개호 의료원 · 난치병 상담 지원 센터 ·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치료사 또는 유도 접골사가 업무를 하는 시술소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정 기관의 청사
<p>■規制内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屋内に喫煙場所をつくることはできません。 ・ 屋外に喫煙場所をつくる場合、特定屋外喫煙場所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p>■규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옥외에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특정 야외 흡연 구역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p>◎ 2019 年 7 月 1 日から規制が適用されています。</p>	<p>◎2019 年 7 月 1 일부터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p>
<p>2 大学・児童福祉施設など</p>	<p>2 대학·아동복지시설 등</p>
<p>■対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学 ・ 専門学校 ・ 各種養成施設 ・ 児童福祉施設*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 전문학교 · 각종 육성 시설 · 아동복지시설*
<p>* 児童福祉法第 7 条第 1 項に規定する児童福祉施設のほか、障害児通所支援事業、児童自立生活援助事業、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子育て短期支援事業、地域子</p>	<p>*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외, 장애아 통소 지원</p>

<p>育て支援拠点事業、一時預かり事業、病児保育施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母子健康包括支援センター ・少年院及び少年鑑別所 	<p>사업, 아동 자립 생활 원조 사업,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 육아 단기 지원 사업,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사업, 일시 탁아 사업, 병아(病児) 보육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자 건강 포괄 지원 센터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소년 분류심사원)
<p>■規制内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屋内に喫煙場所をつくることはできません。 ・屋外に喫煙場所をつくる場合、特定野外喫煙場所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p>■규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옥외에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특정 야외 흡연 구역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p>◎ 2019 年 7 月 1 日から規制が適用されています。</p>	<p>◎2019 年 7 月 1 일부터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p>
<p>3 幼稚園～高校・保育所など</p>	<p>3 유치원~고등학교·보육소 등</p>
<p>■対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幼稚園、小学校、中学校、義務教育学校、高等学校、中等教育学校、特別支援学校、高等専門学校 ・保育所 ・その他、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など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고등 전문학교 ·보육소※ ·그 외 인터내셔널 스쿨 등 ※부모의 근로 등의 이유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0 세~취학전의 아동을 맡아 보육하는 시설.
<p>■規制内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屋内に喫煙場所をつくることはできません。 ・屋外に喫煙場所をつくらないように努めなければいけません。 	<p>■규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옥외에 흡연 구역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p>◎2019 年 7 月 1 日から屋内の規制が適用されています。</p>	<p>◎2019 年 7 月 1 일부터 옥내용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p>

◎2019 年 9 月 1 日から屋外の規制が適用されています。	◎2019 年 9 月 1 일부터 옥외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4 宿泊施設	4 숙박시설
■対象 旅館業の施設	■대상 여관업 시설
■規制内容 ・ 屋内の喫煙室は、喫煙専用室または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 屋外は規制の対象外です。ただし、喫煙場所をつくる場合は、受動喫煙を生じさせることがない場所とする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규제 내용 ·옥내 흡연실은 흡연전용실 또는가열식 전자 담배 전용 흡연실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옥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간접흡연 노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適用除外 旅館・ホテルの客室は、規制を適用しません。	■적용 제외 여관·호텔의 객실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0 年 4 月 1 日から規制を適用します。	◎2020 年 4 月 1 일부터 규제를 적용합니다.
5 飲食店 [シガーバー（スナック）は含まない。]	5 음식점 [시가 바 (Cigar Bar, 스낵 주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対象 ・ 飲食店、喫茶店 ・ 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シガーバー（スナック）は含まない。）	■대상 ·음식점, 카페 ·그 외, 이에 준하는 시설(시가 바 Cigar Bar, 스낵 주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規制内容 ・ 屋内の喫煙室は、喫煙専用室または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규제 내용 ·옥내 흡연실은 흡연전용실 또는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의 요건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屋外は規制の対象外です。ただし、喫煙場所をつくる場合は、受動喫煙を生じさせることがない場所とする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p>만족하여야 합니다.</p> <p>·옥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간접흡연 노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p>
<p>■従業員がいない飲食店</p> <p>以下の①～④すべてを満たした店は、店内の一部または全部を喫煙可能室と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います。</p> <p>①2020年4月1日時点で既に営業している</p> <p>②施設内の客席部分の床面積が100㎡以下</p> <p>③中小企業（資本金の額または出資の総額が5千万円以下）または個人経営</p> <p>④従業員*がいない</p> <p>★ POINT ④は都独自のルールです。</p>	<p>■종업원이 없는 음식점</p> <p>다음①~④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점포는 매장 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흡연 가능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①2020년 4월 1일 시점에 이미 영업 중인 매장</p> <p>②시설 내의 객석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 이하</p> <p>③중소기업(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 또는 개인 경영</p> <p>④종업원*이 없는 매장</p> <p>★ POINT ④는 도의 독자적인 규칙입니다.</p>
<p>*従業員の定義</p> <p>労働基準法第9条に規定する労働者</p> <p>(例) 正社員、契約社員、アルバイト、パートタイム など</p> <p>※ 同居の親族のみを使用する事業または事務所に使用される者及び家事使用人を除きます。</p>	<p>*종업원의 정의</p> <p>노동 기준법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노동자</p> <p>(예) 정직원, 계약 직원,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 등</p> <p>※동거 친족만이 종사하는 사업 또는 사무실에 고용된 자 및 가사 노동자를 제외합니다.</p>
<p>◎2020年4月1日から規制を適用します。</p>	<p>◎2020년 4월 1일부터 규제를 적용합니다.</p>
<p>◎2019年9月1日から店内の喫煙状況の店頭表示が義務化されています。</p>	<p>◎2019년 9월 1일부터 매장 내의 흡연 상황을 알리는 매장 출입구 표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p>
<p>6 シガーバー(スナック)・たばこ販売店等</p>	<p>6 시가 바(Cigar Bar, 스낵 주점)·담배 판매점 등</p>
<p>■対象</p> <p>喫煙を主目的とするバー、スナック等</p>	<p>■대상</p>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Bar), 스낵 주점 등
<p>以下の要件を満たす飲食店</p> <p>① たばこの対面販売（出張販売を含む。）をしていること</p> <p>② 「通常主食*と認められる食事」を主として提供していないこと</p> <p>*（例）米飯類、菓子パンを除くパン類、めん類、ピザパイ、お好み焼きなど</p>	<p>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음식점</p> <p>①담배의 대면 판매(출장 판매를 포함한다)를 하는 매장</p> <p>②「통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p> <p>*（예）밥류, 디저트 빵을 제외한 빵류, 면류, 피자 파이, 오코노미야키 등</p>
店内で喫煙可能なたばこ販売店	매장 내에서 흡연 가능한 담배 판매점
<p>以下の要件を満たす施設</p> <p>① たばこまたは喫煙器具の販売（たばこについては対面販売に限る。）をしていること</p> <p>② 設備を設けて客に飲食をさせる営業を行っていないこと</p>	<p>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시설</p> <p>①담배 또는 흡연 기구 판매(담배에 대해서는 대면 판매 한정)를 하는 매장</p> <p>②설비를 설치하여 손님에 대해 식음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p>
公衆喫煙所	공중 흡연 구역
<p>屋内の全部を専ら喫煙をする場所とする施設</p> <p>■規制内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屋内の喫煙室は、喫煙目的室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 屋外は規制の対象外です。ただし、喫煙場所をつくる場合は、受動喫煙を生じさせることがない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p>옥내 전부를 완전 흡연 전용으로 구분한 시설</p> <p>■규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내 흡연실은 흡연 목적실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옥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간접흡연 노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 2020 年 4 月 1 日から規制を適用します。	◎2020 年 4 月 1 일부터 규제를 적용합니다.
コラム 複数の施設の類型にまたがる場合の取扱いは？	칼럼 : 복수 시설 유형의 건물의 경우는?
・ 第一種施設内に第一種施設以外の施設がある施設内すべてに第一種施設の規制を適用します。	·제 1 종 시설 내에 제 1 종 시설 이외의 시설이 포함되어있다.

	시설 내의 모든 구역에 대해 제 1종 시설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例) 大学や病院の施設内に食堂(飲食店)がある場合、食堂スペースも第一種施設の規制を適用します	(예) 대학이나 병원 시설 내에 식당(음식점)이 포함된 경우는 식당 구역도 제 1종 시설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一つの施設内に複数の施設類型が混在している 施設全体は第二種施設に分類します。施設内に第一種施設が存在する場合は、その場所に限り、第一種施設の規制を適用します。	・하나의 시설 내에 복수의 시설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시설 전체는 제 2종 시설로 분류합니다. 시설 내에 제 1종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제 1종 시설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例) 商業ビルの中にクリニックがある場合、ビル全体は第二種施設、クリニックの占有部分は第一種施設の規制を適用します。	(예) 상업 빌딩 내에 클리닉이 포함된 경우는 빌딩 전체는 제 2종 시설, 클리닉 점유 면적 구역은 제 1종 시설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7 多数の人が利用する施設(1~6を除く)	7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1~6을 제외)
■対象 2人以上の人が利用する施設	■대상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規制内容 ・屋内の喫煙室は、喫煙専用室または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屋外は規制の対象外です。ただし、喫煙場所をつくる場合は、受動喫煙を生じさせることがない場所とする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규제 내용 ・옥내 흡연실은 흡연전용실 또는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옥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간접흡연 노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 2020年4月1日から規制を適用します。	◎2020년 4월 1일부터 규제를 적용합니다.
8 バス・タクシー・飛行機・鉄道・船舶	8 버스·택시·비행기·철도·선박
■対象 バス、タクシー、旅客機、旅客鉄道、旅客船	■대상 버스, 택시, 여객기, 여객 철도, 여객선
■規制内容	■규제 내용

<p>バス・タクシー・飛行機</p> <p>車内（機内）に喫煙場所をつくることはできません。</p> <p>鉄道・船舶</p> <p>車内（船内）の喫煙室は、喫煙専用室または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の要件を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なお、宿泊用の客室は規制の対象外です。</p>	<p>버스·택시·비행기</p> <p>차내(기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p> <p>철도·선박</p> <p>차내(선내)의 흡연실은 흡연전용실 또는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숙박용 객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 2020 年 4 月 1 日から規制を適用します。</p>	<p>◎2020 年 4 月 1 일부터 규제를 적용합니다.</p>
<p>⑥改正法・条例で定める喫煙できる場所</p> <p>屋外</p> <p>特定屋外喫煙場所…大学や病院などの喫煙場所</p>	<p>⑥개정법·조례로 규정하는 흡연 가능 구역</p> <p>옥외</p> <p>특정 옥외 흡연 구역...대학이나 병원 등의 흡연 구역</p>
<p>■要件</p> <p>①第一種施設の屋外の場所であること</p> <p>②管理権原者によって禁煙場所と区画されていること</p> <p>③ 喫煙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旨を記載した標識の掲示がされていること</p> <p>④ 施設の利用者が通常立ち入らない場所に設置すること (例) 建物の裏や屋上など</p>	<p>■요건</p> <p>①제 1 종 시설의 옥외 구역이어야 한다.</p> <p>②관리 권원자에 의해 금연 구역과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p> <p>③흡연 가능 구역임을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④시설 이용자가 평소에 입장하지 않는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예) 건물 뒤나 옥상 등</p>
<p>■吸うことができるたばこ</p> <p>たばこ全般</p>	<p>■흡입 담배</p> <p>담배 전반</p>
<p>屋内</p> <p>屋内に喫煙室を設置する際は、喫煙室から施設の屋内にたばこの煙が流出しないように、以下の基準を満たした措置を講じる必要があります。</p>	<p>옥내</p> <p>옥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흡연실로부터 시설 옥내에 담배 연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p>
<p>■喫煙室外への煙の流出防止措置（=技術的基準）</p> <p>① 出入口において喫煙室の外側から内側に流入する空気の気流が 0.2 m/秒以上であること</p>	<p>■흡연실 밖으로의 연기 유출 방지 조치(=기술적 기준)</p> <p>①출입구의 경우 흡연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하는 공기 기류가 0.2m/초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たばこの煙(加熱式たばこの蒸気を含む。)が喫煙室の中から施設の屋内に流出しないよう、壁・天井等によって区画すること</p> <p>③ たばこの煙が施設の屋外に排気されていること</p>	<p>②담배 연기(가열식 전자 담배의 증기를 포함)가 흡연실 내부에서 시설 옥내에 유출되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 등으로 구획하여야 한다.</p> <p>③담배 연기를 시설 옥외로 배기하여야 한다.</p>
<p>・施設内が複数の階に分かれている場合は、壁・天井等で区画した上で、喫煙階と禁煙階を分ける取扱いも可能です。(=フロア分煙可)</p> <p>・従業員がいない等一定の要件を満たした飲食店が、喫煙可能室として店内を全面喫煙可能とする場合は、②のみ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p> <p>・2020年4月1日に既に存在している建築物等で、管理権原者の責任において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によって技術的基準を満たすことが困難な場合は、一定の経過措置が設けられています。</p> <p>経過措置では、「たばこの煙を十分に浄化し室外に排気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ことにより、上記の技術的基準に適合した措置を講じた場合と同等程度にたばこの煙の流出を防止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ます。</p> <p>具体的には、相応の機能を持つ脱煙機能付き喫煙ブースを設置し当該喫煙ブースから排出された気体が室外(第二種施設の屋内又は内部の場所に限る。)に排気されることが必要です。</p>	<p>・시설 내가 복수 층으로 구분된 경우 벽이나 천장 등으로 구획합니다. 또한, 흡연 층과 금연 층을 구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층별 분연 가능)</p> <p>・종업원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음식점이 흡연 가능실로서 매장 내를 전면 흡연 가능 구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②만 만족하면 됩니다.</p> <p>・2020년 4월 1일에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 등으로 관리 권원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불귀책 사유)에 따라 기술적 기준의 만족이 곤란한 경우는 일정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p> <p>경과 조치는 「담배의 연기를 충분히 정화하여 실외에 배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위의 기술적 기준을 만족하는 조치를 강구하였을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담배 연기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p> <p>구체적으로는 상응하는 기능을 보유한 탈연 기능 탑재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해당 흡연 부스로부터 배출된 기체가 실외(제 2종 시설의 옥내 또는 내부 구역 한정)로 배기되어야 합니다.</p>
<p>(A) 喫煙専用室…たばこを吸うためだけの喫煙室</p>	<p>(A) 흡연전용실...담배를 흡연하기 위한 흡연 전용실</p>
<p>■要件</p> <p>① 第二種施設または鉄道・船舶 の屋内の一部の場所であること</p> <p>★POINT 施設内の全部の場所を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p>	<p>■요건</p> <p>①제 2종 시설 또는 철도·선박 옥내의 일부 구역이어야 한다.</p> <p>★POINT 시설 내의 모든 구역을 흡연 전용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p>

<p>②専ら喫煙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こと</p> <p>★POINT 喫煙専用室内では、飲食等、喫煙以外のことはできません。</p> <p>③ 喫煙室から施設の屋内にたばこの煙が流出することを防ぐための基準（=技術的基準）に適合していること</p> <p>④ 喫煙室の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以下の事項が容易に識別できる標識を掲示するこ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専ら喫煙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旨 ・ 20 歳未満の者の立入りが禁止されている旨 <p>⑤ 施設の主な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喫煙専用室が設置されている旨を記載した標識を掲示すること</p>	<p>②흡연 전용 구역이어야 한다</p> <p>★POINT 흡연전용 실내에서는 식사 등 흡연 이외의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p> <p>③흡연실부터 시설 옥내에의 담배 연기 유출을 방지하는 기준(=기술적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p> <p>④흡연실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연 전용 구역에 대한 안내 ·만 20세 미만의 자 출입 금지 안내 <p>⑤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흡연전용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吸うことができるたばこ</p> <p>たばこ全般</p>	<p>■흡입 담배</p> <p>담배 전반</p>
<p>■運用に当たって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歳未満の者を喫煙専用室に立ち入らせてはなりません。 ・ 喫煙専用室を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標識を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施設内のすべての喫煙専用室を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直ちに、標識を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p>■標識イメージ</p>	<p>■운용에 즈음한 준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20세 미만의 자를 흡연전용실에 입장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흡연 전용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의 모든 흡연 전용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즉시 안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p>■안내 표지 이미지</p>
<p>(B) 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加熱式たばこに限り、吸いながら飲食等ができる喫煙室</p>	<p>(B)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가열식 전자 담배 한정으로 흡입과 식사를 할 수 있는 흡연실</p>
<p>①第二種施設または鉄道・船舶の屋内の一部の場所であること</p> <p>★POINT 施設内の全部の場所を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p> <p>②喫煙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こと</p>	<p>①제 2종 시설 또는 철도·선박 옥내의 일부 구역이어야 한다.</p> <p>★POINT 시설 내 전부를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p>

<p>★POINT 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内では、飲食等、喫煙以外のこともできます。</p> <p>③ 喫煙室から施設の屋内にたばこの煙が流出することを防ぐための基準（＝技術的基準）に適合していること</p> <p>④ 喫煙室の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以下の事項が容易に識別できる標識を掲示するこ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喫煙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旨 ・20歳未満の者の立入りが禁止されている旨 <p>⑤ 施設の主な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が設置されている旨を記載した標識を掲示すること</p>	<p>②흡연이 가능한 구역이어야 한다.</p> <p>★POINT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내에서는 식사 등 흡연 이외의 활동도 가능합니다.</p> <p>③흡연실부터 시설 옥내에의 담배 연기 유출을 방지하는 기준(=기술적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p> <p>④흡연실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연 가능 구역 알림 ·만 20세 미만의 자 출입 금지 알림 <p>⑤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吸うことができるたばこ 加熱式たばこのみ</p>	<p>■흡입 가능 담배 가열식 전자 담배 한정</p>
<p>■運用に当たって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歳未満の者を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に立ち入らせてはなりません。 ・施設の営業について広告または宣伝をするときは、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を設置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を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上記④の標識を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施設内のすべての指定たばこ専用喫煙室を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直ちに、上記⑤の標識を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p>■운용에 즈음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20세 미만의 자를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에 입장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시설 영업에 관해 광고 또는 선전할 때는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의 설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상기 ④의 안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의 모든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즉시 상기 ⑤의 안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p>■標識イメージ</p>	<p>■안내 표지 이미지</p>

<p>(C) 喫煙可能室…従業員がいない飲食店の喫煙席</p> <p>■要件</p> <p>① 従業員がいない等一定の要件を満たした既存飲食店の屋内の全部または一部の場所であること</p> <p>②喫煙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こと</p> <p>★POINT 喫煙可能室内では、飲食等、喫煙以外のこともできます。</p> <p>③ 喫煙室から施設の屋内にたばこの煙が流出することを防ぐための基準（＝技術的基準）に適合していること</p> <p>④ 喫煙室の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以下の事項が容易に識別できる標識を掲示するこ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喫煙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旨 ・20歳未満の者の立入りが禁止されている旨 <p>⑤ 施設の主な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喫煙専用室が設置されている旨を記載した標識を掲示すること</p> <p>※ 施設の全部を喫煙可能室とする場合であって、施設の主な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既に④の標識が掲示されているときは不要です。</p>	<p>(C) 흡연실...종업원이 없는 음식점의 흡연석</p> <p>■요건</p> <p>①종업원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기존 음식점의 옥내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이어야 한다</p> <p>②흡연이 가능한 구역이어야 한다</p> <p>★POINT 흡연실내에서는 식음 등 흡연 이외의 활동도 가능합니다.</p> <p>③흡연실부터 시설 옥내에의 담배 연기 유출을 방지하는 기준(=기술적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p> <p>④흡연실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연 가능 구역 알림 ·만 20세 미만의 자 출입 금지 알림 <p>⑤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흡연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시설 전부를 흡연실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이미 ④의 안내 표지가 설치된 경우는 불필요합니다.</p>
<p>■吸うことができるたばこ</p> <p>たばこ全般</p>	<p>■흡입 담배</p> <p>담배 전반</p>
<p>■運用に当たって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所在地の保健所等に届出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p>届出事項 ①施設の名称・所在地、②管理権原者氏名・住所（法人代表者名・所在地）、③従業員がいないこ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歳未満の者を喫煙可能室に立ち入らせてはなりません。 	<p>■운용에 즈음한 준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소재지의 보건소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p>신고 사항 ①시설 명칭·소재지, ②관리 권원자 이름·주소(법인 대표자명·소재지),③종업원이 없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20세 미만의 자를 흡연 가능실에 입장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以下の書類を備え、保管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書類の内容 ①施設内の客席部分の床面積に係る資料 ②会社経営の場合、資本金の額または出資の総額に係る資料 ③従業員への給料の支出がないことを示す資料 ・施設の営業について広告または宣伝をするときは、喫煙可能室を設置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喫煙可能室を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標識を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施設内のすべての喫煙可能室を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直ちに、標識を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서류 내용 ①시설 내 객석 부분의 바닥 면적 관련 자료 ②회사 경영의 경우,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 관련 자료 ③종업원에 대한 급료 지출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시설 영업에 관해 광고 또는 선전할 때는 흡연실의 설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흡연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안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의 모든 흡연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즉시 안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p>■標識イメージ</p>	<p>■안내 표지 이미지</p>
<p>(D) 喫煙目的室…シガーバーなどの喫煙室</p>	<p>(D) 흡연실...시가 바(Cigar Bar) 등의 흡연실</p>
<p>■要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シガーバー (スナック)・たばこ販売店の屋内の全部または一部の場所であること ②喫煙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こと ★喫煙目的室内では、飲食等、喫煙以外のこともできます。 ③ 喫煙室から施設の屋内にたばこの煙が流出することを防ぐための基準 (=技術的基準) に適合していること ④ 喫煙室の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以下の事項が容易に識別できる標識を掲示すること ・喫煙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ある旨 ・ 20 歳未満の者の立入りが禁止されている旨 	<p>■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시가 바(Cigar Bar, 스낵 주점)·담배 판매점의 옥내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이어야 한다 ②흡연 가능 구역이어야 한다 ★흡연 목적실내에서는 식음 등 흡연 이외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③흡연실부터 시설 옥내에의 담배 연기 유출을 방지하는 기준(=기술적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흡연실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연 가능 구역 알림 ·만 20세 미만의 자 출입 금지 알림

<p>⑤ 施設の主な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喫煙目的室が設置されている旨を記載した標識を掲示すること</p> <p>※ 施設の全部を喫煙目的室とする場合であって、施設の主な出入口の見やすい場所に、既に④の標識が掲示されているときは不要です。</p>	<p>⑤ 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흡연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 시설 전부를 흡연실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이미 ④의 안내 표지가 설치된 경우는 불필요합니다.</p>
<p>■吸うことができるたばこ</p> <p>たばこ全般</p>	<p>■흡입 담배</p> <p>담배 전반</p>
<p>■運用に当たって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歳未満の者を喫煙目的室に立ち入らせてはなりません。 ・ 以下の内容を示す帳簿を備え、保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p>帳簿の記載事項 たばこ事業法第 22 条第 1 項または第 26 条第 1 項の許可に関する情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施設の営業について広告または宣伝をするときは、喫煙目的室を設置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喫煙目的室を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上記④の標識を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施設内のすべての喫煙目的室を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直ちに、上記⑤の標識を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p>■운용에 즈음한 준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20 세 미만의 자를 흡연 목적실에 입장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보존하여야 합니다. <p>장부 기재사항 담배사업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의 허가에 관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영업에 관해 광고 또는 선전할 때는 흡연실의 설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흡연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상기 ④의 안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의 모든 흡연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즉시 상기 ⑤의 안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p>■標識イメージ</p>	<p>■안내 표지 이미지</p>
<p>⑦ 施行時期</p>	<p>⑦ 시행 시기</p>
<p>2020 年 4 月 1 日</p> <p>(飲食店の店頭表示義務化や学校等第一種施設の規制など、すでに一部施行し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p>	<p>2020 年 4 月 1 日</p> <p>(음식점 매장 출입구 안내 표지 의무화, 학교 등 제 1 종 시설 규제 등 이미 일부 시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p>
<p>受動喫煙防止対策関連施策※原則として、全て日本語で対応させていただきます。</p>	<p>간접흡연 방지 대책 관련 시책 ※원칙적으로 모두 일본어 한정으로 대응합니다.</p>

<p>■喫煙専用室等専門アドバイザー</p> <p>専門家が、喫煙専用室の設置等に際し、電話や実地による相談支援や、環境測定等の調査を行います。ご利用の際は、下記「もくもくぜろ」までお電話ください。</p> <p>■東京都モデル標識の作成、ステッカーの配布</p> <p>改正法・条例に適合したモデル標識を作成します。また、施設の出入口や喫煙場所に掲示できる標識ステッカーを配布します。詳しくは HP をご覧ください</p>	<p>■흡연전용실 등 전문 어드바이저</p> <p>전문가가 흡연전용실 설치 등에 대해 전화나 현장에서의 상담 지원, 환경 측정 등의 조사를 지원합니다. 이용하실 때는 다음 번호(0570-069690)로 연락해 주십시오.</p> <p>■도쿄도 모델 안내 표지 작성, 스티커 배포</p> <p>개정법·조례에 따른 모델 안내 표지를 작성합니다. 또, 시설 출입구나 흡연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표지 스티커를 배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P 를 참조해 주십시오</p>
<p>■受動喫煙防止対策や、改正法・条例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は以下の番号まで</p> <p>0570-069690 (もくもくぜろ)</p> <p>月～金(祝日・年末年始除く) 9時から 17時 45分</p> <p>☆受付時間外は、HP のチャットボットをご活用ください!</p> <p>※相談料は無料ですが、別途通話料がかかります</p>	<p>■간접흡연 방지 대책이나 개정법·조례에 관한 문의는 다음 번호로</p> <p>0570-069690</p> <p>월~금(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9시부터 17시 45분</p> <p>☆접수 시간 외는 HP 의 챗봇(Chatbot)을 활용해 주십시오!</p> <p>※상담료는 무료이나 통화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p>
<p>■受動喫煙防止対策助成金</p> <p>厚生労働省では、中小企業事業主が受動喫煙防止対策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経費のうち、一定の基準を満たす喫煙室の設置などにかかる工費、設備費、備品費、機械装置費などの経費に対して助成を行います。ご相談は、東京労働局健康課(03-3512-1616)まで。詳しくは厚生労働省 HP をご覧ください。</p> <p>※時期によりステッカーの在庫状況や補助金の受付の状況が異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p>	<p>■간접흡연 방지 대책 조성금</p> <p>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간접흡연 방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한 흡연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설비비, 비품비, 기계 장치비 등의 경비를 조성합니다. 상담은 도쿄 노동국 건강과(東京労働局健康課, 03-3512-1616)로. 자세한 사항은 후생 노동성 HP 를 참조해 주십시오.</p> <p>※시기에 따라 스티커 재고 상황이나 보조금 접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p>東京都福祉保健局ホームページ「とうきょう健康ステーション」 受動喫煙防止対策の最新情報を発信しています。</p>	<p>도쿄도 복지 보건국(東京都福祉保健局) 홈페이지「도쿄 건강 스테이션」 간접흡연 방지 대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p>

2019 年 12 月発行

東京都福祉保健局保健政策部健康推進課 ☎ 03-5320-4361

全て日本語で対応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19 年 12 月 발행

도쿄도 복지 보건국 보건정책부 건강 추진과

(東京都福祉保健局保健政策部健康推進課) ☎03-5320-4361

원칙적으로 모두 일본어 한정으로 대응합니다.